
대 · 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2019. 12.

관계부처 합동

순서

I. 추진배경	1
II. 추진방향	6
III. 세부 추진과제	8
1. 거래 공정화 기반 구축	8
2.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13
3.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확산	17
4. 시장감시 강화	20
[기타] 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	24
IV. 과제별 추진일정	27

I. 추진배경

1.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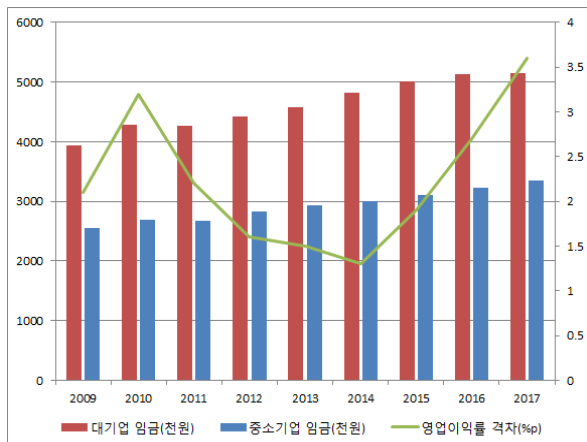
□ 중소기업은 창업이나 고용 창출 측면에서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경제 주체임

- 사업체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2.9%를 차지 (2017년)
- 제조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12) 45.3%→('13) 48.3%→('14) 48%→('15) 49%, 통계청 경제총조사]하는 추세

□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임금·저이익 구조 하에서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고 투자여력도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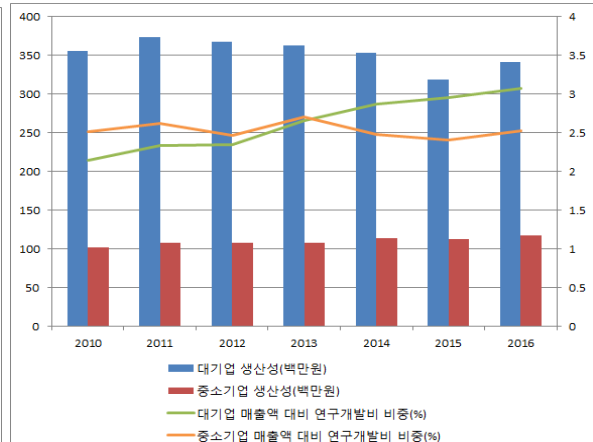
- (임금 및 영업이익률)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대비 평균 63% 수준이며, 영업이익률의 경우 '14년 이후 대기업의 수익성 상승으로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14) 1.3%p → ('17) 3.6%p]
- (생산성, R&D)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평균 31% 수준에 머물고 있고, 매출액 대비 R&D 규모도 '10년 이후 대기업과의 격차가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고 커지는 상황 [('10) +0.37%p → ('16) -0.54%p]

임금 및 영업이익률 격차



* 중소기업 위상지표(중기중앙회),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생산성 및 R&D 격차



* 한국생산성본부(2018), 과기정통부(2017)

<참고> 대·중소기업 간 이익률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일부 산업의 경우 외국에 비해서도 격차가 큰 상황

- 제조업 기준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16) 1.4%p (대 6.8%, 중소 5.4%) → (’17) 4.0%p (대 9.1%, 중소 5.1%) → (’18) 4.7%p (대 8.9%, 중소 4.2%)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자동차 산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익률 격차가 외국보다 큼

< 주요국의 자동차 산업분야 기업 간 영업이익률 비교(%) >

구 분	중국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완성차 업체	8.1	9.6	8.2	7.1	6.2
부품업체	7.4	4.4	8.2	8.0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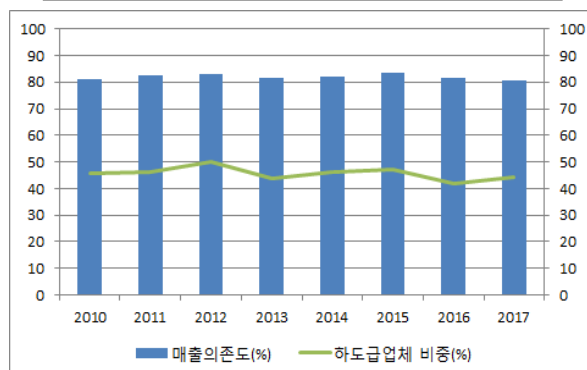
* 산업연구원(전속거래 및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7), 2015년 기준

□ 이러한 격차의 중요한 원인은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거래구조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는 하도급업체이고, 해당 업체들은 매출액의 80.8%를 원사업자 납품을 통해 창출 (2017년)
 - 하도급업체 비중 및 원사업자 의존도는 2010년 이후 큰 변화 없이 평균적으로 46% 및 82%로 높은 수준을 유지
- 또한 하도급업체는 거래단절시 타 업체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 (2018년)
 - 하도급업체의 60%는 거래선 대체가 어렵다고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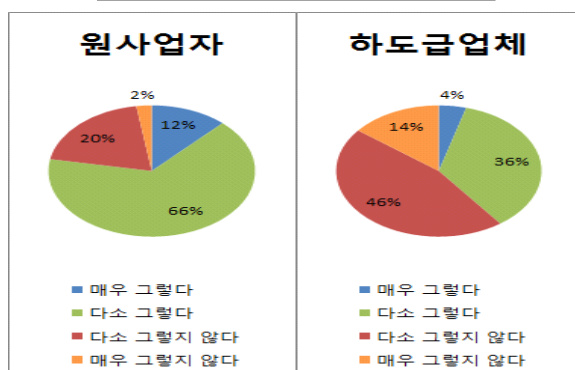
* 반면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는 22%만이 거래선 대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

하도급업체 비중 및 매출 의존도



* 중소기업 실태조사(중기부)

거래단절시 대체가능정도



* 2018년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중기중앙회)

2. 그간 추진 성과

- 현 정부 출범 후 하도급 문제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지속적으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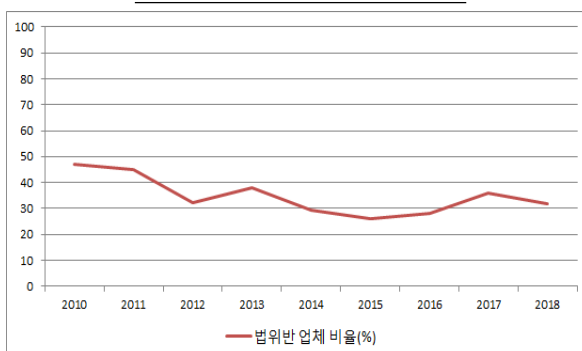
* 「기술유용 근절대책」('17.9.),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17.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18.5.) 등

- 전속거래 강요·원가정보 요구 금지, 최저임금 인상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도입('18.1월), 기술탈취 조사시효 3→7년 연장('18.4월)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18.6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18.11월), 수·위탁거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도입('19.1월), 교섭력 강화를 위한 중기조합 공동행위 허용('19.8월)

- 이러한 노력 등으로 거래질서가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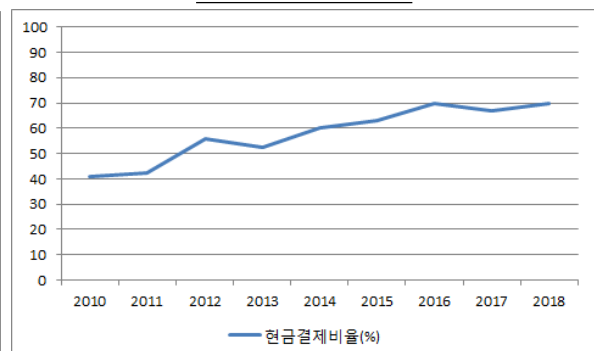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법위반 혐의가 감소하고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 '10년 47.0%에서 '18년에는 31.7%로 감소
 - (현금결제 비율) '10년 40.9%에서 '18년에는 70%까지 상승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공정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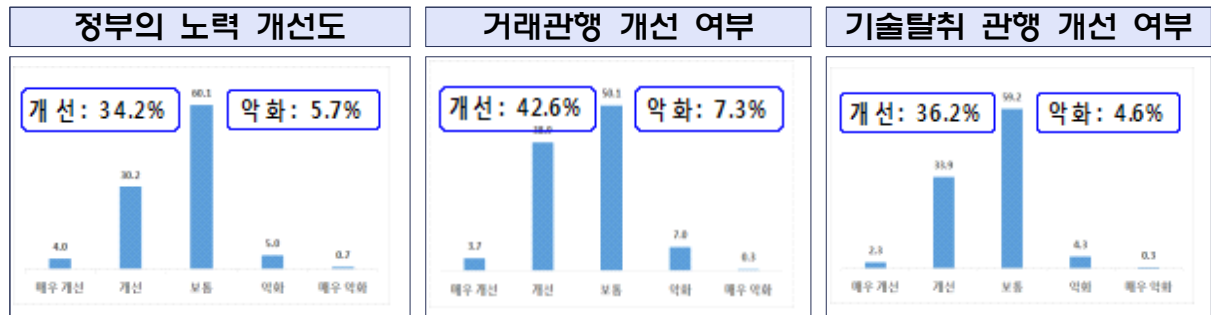
현금결제 비율



*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중기중앙회)

- 중소기업 대상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
 - 실질적으로 거래관행과 기술탈취 문제도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체감

< 하도급 거래 관련 실태조사 ('19.10, 중기중앙회) >



□ 또한, 민간이 선도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경제전반으로 확산 중**

- 협력사 외에도 관련 협·단체와 자발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자상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등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 자발적 상생기업 MOU 현황: 네이버, 포스코, 신한금융, 삼성전자 등 총 9건 체결

** 동반성장지수 기업 수도 지속 증가: ('16) 169 → ('17) 185 → ('18) 200 → ('19) 220

- '18년도 **상생결제 금액이 최초로 100조원 돌파**, 민간 대기기업의 **상생기금 출연도 2천억 원을 최초로 달성**

* 연간 상생결제액(조원): ('15) 24.6 → ('16) 66.7 → ('17) 93.6 → ('18) 107.4

** 상생기금 출연액(억원): ('15) 1,424 → ('16) 1,500 → ('17) 1,571 → ('18) 2,013

3. 대책 추진 필요성

□ 그러나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

- 대금결제 조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협상력 격차에 따른 납품단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납품거래시 하도급업체 애로사항>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납품단가 미반영	2위	2위	1위	2위	1위	2위	1위	1위
납품단가 인하	1위	1위	2위	1위	2위	1위	2위	2위

* 출처: 중소기업 실태조사(중기부)

- 또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사유가 확대되었음에도 개선 요구가 높음**

*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보완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49.1%) ['18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중기중앙회]

- 불공정행위 근절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64.5% ['18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 하위 거래단계로 갈수록 거래조건이 악화되는 현상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 협력업체 대금지급조건 비교 >

(단위 : %, 일)

구 분	현금결제비율	현금수취기일	어음수취기일	불공정거래 응답비율
1차 협력업체	70.8	30.7	39.1	3.7
2차 협력업체	67.4	36.7	42.2	8.9
3차 협력업체	63.3	40.8	46.7	13.3

* 출처: 2018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중기중앙회)

- 기존 대책은 범위반 억제와 제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 제도 개선의 체감도가 낮은 측면 존재

- 범위반 행위 처벌이 피해기업 혜택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재만으로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모두 해결하기는 곤란

* 부당단가 인하 행위에 대해 제재가 있더라도 별도 소송 과정을 거쳐야 피해 구제 가능

※ 2018년 11월 대통령 주재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도 '국민체감형 정책'의 하나로 '범정부 하도급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

-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 대·중소기업이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개선하는 등 구조적 관점의 제도 개선을 추진

- 유인 제공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자발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협력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

- 2차 협력사 이하로 상생협력 확산 노력을 계속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민간기업의 상생협력 활동도 촉진할 필요

* 상생결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구매기업 → 1차 협력기업'의 상생결제 비중은 98.8%, 1차 이하의 상생결제 비중은 1.2%(4.4조) 수준으로 미흡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은 '10년 이후 정제된 상황

- ('07~'09) 28개 → ('10) 56개 → ('11~'14) 59개 → ('15~) 58개

II. 추진방향

- 중기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종합적 관점의 대책을 추진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대·중소기업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모색
- ⇒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정책 수단을 확충하는 한편,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대책 수립
- ①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보완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개선하는 등 구조적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
 - ② 범위반 억지력 수단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므로 유인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협력기업 간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
 - ③ 기존 거래기업 외에도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생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확산함으로써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조성
 - ④ 일부 자율적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

현행(As-Is)		개선(To-Be)
○ 불공정한 거래행위 유형을 금지하는 형태의 규제(행태적 접근)	⇒	○ 중소기업 협상력 제고 및 피해구제 절차 개선 정책 마련(구조적 접근)
○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처벌을 통한 정부 개입 중심의 거래질서 개선		○ 유인제공을 통한 상생협력 활동 촉진 및 거래관행 개선 노력 강화
○ 개별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형식적, 폐쇄적 지원(협력사 중심)		○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조성
○ 일부 자율적 해결 어려운 문제 존재		○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감시 노력

※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하도급 관련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도 추진

➡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및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으로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성장에도 기여**

- 중소기업은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어 혁신 동력을 확보하고, 대기업은 안정적 공급선을 통해 차세대 제품 개발 등 혁신 지속

<추진전략>

기대 효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정착
⇒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혁신 성장 기반 구축**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 4대 정책 목표 및 16대 추진 과제 -

1. 거래 공정화 기반 구축

- 납품대금 조정신청권 확대
- 중소기업단체의 교섭력 강화
- 피해사업자들 위한 민사·행정 절차 개선
- 수·위탁 거래 자율준수 기반 구축
-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2.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증진

- 상생결제 활성화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체계 개편
- 상생협력기금 등 협력자금 확대 운용
- 더불어 성장하는 거래문화 촉진

3.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확산

- 자상한 기업 발굴·확산
- 중소기업 판로확보 지원
- 복지·임금 격차 완화

4. 시장감시 강화

- 건설분야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감시활동 강화
- 상생협약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 시장감시 사각지대 해소

보완·발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17.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18.5.)

III. 세부 추진과제

1 거래 공정화 기반 구축

① 납품대금 조정신청권 확대

□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조정신청 사유 확대 (공정위, 중기부)

-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반 조합보다 높은 협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 협의권을 부여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

- 조합이 협의 중인 사안 중 조합이 요청하고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등 일정요건 하에서 중기중앙회에 협의권을 부여

* 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비율은 0.9%에 불과 ('19년 하도급서면실태조사)

** '조정협의권의 높은 기준요건'과 '협동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력 격차'는 납품 단가 조정협의권이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요 이유임 ('18년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 하도급업체의 대금 조정 요청시 전부·일부수용률은 96%에 달함 ('19년 하도급서면실태조사)

-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 체결 후 예상하지 않은 사정으로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대상 범위에 포함 (하도급법 개정)

* CR(Cost Reduction, 협력업체가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 자동차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남) 체결 이후 예상보다 적은 발주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 손해 발생 가능 ⇒ CR 자체만으로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보기는 어려워 현행 제도상 구제 곤란

□ 중기조합 협의대상 원사업자 범위 확대 등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 조합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 현재는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만 해당

- 일정 수준 이상 원가 변동시 계약체결 이후 경과기간 없이 곧바로 조합이 대금조정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해야만 신청 가능(상생법에 따른 수위탁거래는 즉시 신청가능)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 개선 내용 요약 >

구분	현행	개선
신청(협의)권자	· 수급(수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	· <u>중기중앙회 추가</u>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
신청사유	· 공급원가 변동시	·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 단가인하 계약 체결 후 <u>예상하지 않은 사정으로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u> ’ 포함 (하도급법 개정)
조합 협의가능 원사업자 범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 현행과 동일 · <u>중견기업 전체</u>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 상생법은 모든 중견기업 + 중소기업법상 ‘중기업’까지 포함
조합신청 가능시기	· 계약 체결 이후 60일 경과 * 납품대금 3% 이상 재료비 상승 등	· <u>즉시 신청 가능</u>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 상생법과 동일하게 개정

②

중소기업단체의 교섭력 강화

□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기준 마련 (공정위)

-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자(가맹점 등) 조합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마련(예규 제정)
 -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경쟁제한 효과가 낮은 조합의 행위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으로 규율될 우려 해소
 - * 상호부조 목적, 임의 설립 및 조합원의 임의 가입·탈퇴 가능, 조합원 간 평등한 의결권, 정관상 이익배분의 한도 규정 등을 만족하는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의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음 (공정거래법 제60조)

□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중기부, 고시 제정)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 ('19.8. 중기협동조합법 개정)
 - * 생산, 가공, 수주, 판매 등 공동사업
 - 다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제외
- 중기조합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줄이고 공동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③

피해사업자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행정 절차 개선

□ 중소기업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소송 활성화

(공정위 하도급법, 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

-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
 - 제출 거부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예: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제도 도입 필요성>

-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액 입증은 피해사업자가 하여야 하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

- 부당 단가결정 등의 입증을 위해서는 단가 산정 내역 등 원(위탁)사업자의 내부자료가 필요하나 **현행 문서제출명령 제도**(민사소송법 제344조)로는 한계* 존재

**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 거부가 가능하고 문서 제출에 불응하더라도 '문서 기재에 관한 주장'만 진실로 인정 가능(민소법 제349조)

예) 수급사업자(원고)가 원사업자(피고)의 발주취소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의 내부 품의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법원이 제출명령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불응하더라도 관련 품의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될 뿐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피고가 발주를 취소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되지는 않음

※ 특허법('16.3. 개정) 및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18.11. 국회 제출) 내용 중 손해배상소송과 관련되는 사항을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도 도입 추진

- 소송절차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및 위반시 형사처벌 제도 도입을 검토

* 자료소지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사유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이 자료소지자만 참석시켜 심리하는 절차(in-camera)

** 자료를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문서제출명령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 제재수준 결정시 피해구제 노력 반영 확대 (공정위)

-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을 하도급 별점 경감사유에 포함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 수급사업자 피해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자진시정시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도록 개정 (하도급 과징금고시 개정)
 - * 현재는 피해구제 비율(전부 구제시 20%, 50% 이상 구제시 10%)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하고 있어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경이 곤란
 - 또한 자진시정시 과징금 감경 비율을 현재보다 10%p 상향 (전부 구제시 20% 이내 → 30% 이내, 50% 이상 구제시 10% 이내 → 20% 이내)
 - *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상 자진시정 감경 상한과 동일하게 개정

□ 분쟁조정의뢰 대상 범위 확대 (공정위)

- 자율적 문제 해결 및 피해보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고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와 무관하게 분쟁 조정의뢰가 가능하도록 함 (하도급 공정화지침 개정)
 - * 현재는 신고인이 원하더라도 매출액이 일정 이상(제조·건설 분야 1조5천억원, 용역 분야 1,500억원)인 경우에는 공정위의 신고사건 이첩이 불가능

④

수위탁거래 자율준수 기반구축

□ 상생협력법 위반행위 요건 구체화 (중기부)

- 위탁기업이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에 수록
 - * (예시) 현재는 물품 등의 구매요구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만 설명 ⇒ 위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주로 많이 발생하는 '정당하지 않는 사유'도 예시
- 위탁기업의 자진시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위탁기업이 자진 시정한 경우, 중기부의 개선요구 미 실시 (상생협력법 개정)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중기부)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운영 기업에 대한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별점 경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

<별점 경감 개선(안)>

별점 경감 사유	현행	개선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2점	유지
·교육명령 이수	0.25~0.5점	유지
·납품단가조정 협의제 운영(신설)	-	2점

- 불공정거래신고센터(협력재단)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여 수탁기업의 조정협의 신청절차 및 요건 등 사전 검토 지원

* 협동조합의 협의권 행사를 위해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파견 지원 등

-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 효력* 등 부여 (상생협력법 개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가능(민사집행법)

** 협의회에 당사자 출석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조정조서 작성권 등 부여

- 수·위탁 및 기술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 등을 위해 상생 조정위원회*의 법적근거 마련 추진

* 대검, 공정위,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중기부장관이 위원장)

⑤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 별점 경감사유 및 경감폭 조정·정비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 하도급업체의 권리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등을 고려하여 별점 경감사유를 선별적으로 축소

*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등의 항목을 축소 또는 삭제하는 방안 등

- 별점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미비된 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존규정을 명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

- ①별점 소멸여부 및 범위(기간·점수), ②불복절차 진행사건에 대한 별점 합산여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 ③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④현금결제비율 산정의 기준시점 등 기존 경감규정의 의미를 명확화

□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검토**(공정위)

-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국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범위반 억지력을 높이면서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검토** (연구용역 추진)

* (예) 입찰참가제한 요청 상대방(관계행정기관)의 범위 구체화, 합병·분할시 존속 법인·신설법인의 별점 승계여부 등

□ **반복 범위반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평가 대상 제외** (공정위)

- 하도급법상 입찰참가제한 요청 또는 영업정지 요청 대상 기업*은 **1년간 협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 (공정거래 협약기준 개정)

* 직전 3년간 별점 누산점수 5점(입찰참가제한), 10점(영업정지) 이상인 업체

** 현재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평가 이후 추가 범위반시에만 등급 하락 조치)

□ **법 위반기업에 대한 동반성장평가 등급 하향** (중기부, 동반위)

- 하도급법·상생법 등 위반 업체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최우수·우수등급에서 원천 배제

구 분	과징금	시정조치·경고(2회)	경고(1회)
현 행	등급강등	등급강등	감점 3~5점
개 선	2단계 등급강등	(현 행)	감점 10점

2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① 상생결제 활성화

□ **2차 협력사 이하로의 상생결제 활성화** (중기부)

-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결제 이용을 2차 협력사 이하로 확산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

* 상생결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구매기업 → 1차 협력기업'의 상생결제 비중은 98.8%, 1차 이하의 상생결제 비중은 1.2%(4.4조) 수준으로 미흡

- 대기기업이 1차 이하 협력사의 상생결제를 독려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의 상생결제 활용실적 만점기준 상향* (공정위)

* '대기업 → 1차사'간 상생결제액 대비 '1차사 → 그 이하 협력사'간 상생결제액의 만점 비율 상향(1.7% → 연차별 상향 최대 10% 수준)

○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한 편의성 개선

- 은행별로 상이한 약정절차(기본약정, 대출약정, 양도통지계약 등)를 간소화하여 표준화된 형식으로 통일 유도
-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현금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상생결제의 만기 확대*(1일→10일), 상생결제 알림서비스** 도입 등 분할발행 편의성 개선

* '공정거래 협약기준' 개정(현금결제비율→현금 및 상생결제비율) (공정위)

** 상생결제를 받은 기업에게 채권만기일·의무화 내용 등 고지 (은행 등)

□ 공공기관이 상생결제 확산을 선도할 수 있도록 참여확대 (중기부)

- 상생결제 평가대상 공공기관 확대(58개 → 133개), 상생결제 실적 평가 강화(4→8점 수준) 등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도입 유인

* 공공기관 하도급 상생결제의 경우 일자리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확산 추진

- 339개 공공기관, 404개 지방공기업의 대금결제 시스템 이용현황 조사 → 상생결제 도입 독려 및 지방공기업 평가*에 반영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상생결제 도입·이용 노력 및 성과(정성) 반영 (행안부)

□ 상생결제의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인프라 확충 (중기부)

- 거래기업의 납품대금 보호를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 방지통장으로 지정 추진 (상생협력법 개정)

* 유사사례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공제금수급계좌 압류 금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은행의 현금(예금) 잔액 기반 상생결제 기능 신규 구축 추진

* (현행) 받은 상생결제액이 하위 협력사에게 지급할 결제액보다 적어 분할발행 불편 → (개선) 받은 상생결제액(1~N건)을 적립(현금)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생결제 지급

- 상생결제 서비스를 ‘은행’ → ‘비은행 금융기관’ 확대 추진
 - *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여신전문금융업 등 비은행 금융기관 중 결제 안전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확대 고려

② 공공기관 동반성장체계 개편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 확대 (중기부)

- ‘11년 이후 정채되어 있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상생활동 촉진
 - * 평가대상 : (‘07~’09) 28개 → (‘10) 56개 → (‘11~’14) 59개 → (‘15~) 58개
 -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준으로 대상 확대(58개→133개)
- 신규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평가제도 안착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 컨설팅 지원
 - * 기관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과제 발굴, 평가 우수 공공기관 모범사례 공유 등

□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 (중기부)

- 협력업체에게 저가계약 관행 개선 및 각종 위험·비용 부담 등을 떠넘기는 행태 방지를 위해 지표 신설 및 평가비중 확대
- 기존 평가지표는 단순화(18개 → 10개)하고 공정거래 문화확산, 복지지원 등 핵심지표를 주요 공공기관에 적용
 - 제시된 평가지표 중에서 기관별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선택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
 - * 상생협력 분야 핵심지표는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 적용하고, 추가로 공공기관 여건에 맞는 지표를 선택 (전문평가단이 사후 점검)

< 현행 >	< ‘19년 평가지표 >
□ 공정거래 문화확산 (4점)	□ 공정거래 문화확산 (12점)
· 원재료 상승분 납품단가 반영(2점)	· (좌 동)
· 불공정 거래행위 차단(2점)	· 불공정 거래행위 차단(6점)
	- (신설) 저가계약 관행 개선(2점)
	- (신설) 부당한 업무지시 차단(2점)
	- (신설) 기타 불공정 행위 차단 노력(2점)
	· (신설) 산업재해 예방 노력(2점)
	□ (신설) 협력사 복지지원(2점)

③**상생협력기금 등 협력자금 확대 운용**☐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신규 1조원 조성** ('20~'24년, 중기부, 기재부)

* 상생협력기금 운영현황('11~'19.10) : 221개사 10,820억원 출연, 66,882 중소기업 지원

-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10%) 일몰 연장**('19.말 일몰)

* 조특법 개정완료(일몰기한 3년 연장, '19.12.10 본회의 통과)

- 복지 인프라(예: 숙박시설)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등 현물 지원시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인정 (상생협력법 개정)

* 소진기금, 농어촌 협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현물출연 허용사례 다수

☐ **상생형 벤처펀드 확대 조성** (중기부)

- 대기업·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 5.4조원 조성 추진**

* 포스코 2조원('19.5 협약), 신한금융그룹 1조원('19.6 협약), 우리은행 2.1조원('19.8 협약), 하나은행 0.3조원('19.11 협약)

-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스케일업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 유도

④**더불어 성장하는 거래문화 촉진**☐ **대기업의 자율적인 일감개방 유도** (공정위, 공정거래 협약기준 개정)

- '주요 분야 일감 개방도'를 평가 요소로 추가하고, 계열사 거래를 비계열사 거래로 전환한 실적을 '**효율성 증대**' 항목에서 인정되는 실적에 포함

- 대기업 일감 개방을 유도하여 중소 협력사 성장을 지원하고 산업특성과 무관하게 계열사 간 거래가 빈번한 업종의 효율성도 제고

□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 개선 유도 (공정위, 공정거래 협약기준 개정)

- '1-2차 협력사 간 대금지급조건 개선 유도' 항목 만점 기준을 상향*하여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을 활성화

* $\frac{1차 협력사 \rightarrow 2차 협력사 시스템 이용 지급 대금}{원사업자 \rightarrow 1차 협력사 시스템 이용 지급 대금}$

- 연도별로 단계적 상향: (현행) 1.7% → ('20) 4% → ('21) 7% → ('22) 10%

-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사용 실적을 평가하는 업종을 추가하고, 평가 방식도 가점 부여에서 정규 항목으로 변경

* (현행) 1개 업종(제조) → (개선) 4개 업종(건설·정보서비스·통신 추가)
단, 건설업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2차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협약 체결 대상이 아닌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인상실적까지 고려

3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확산

① 자성한 기업 발굴·확산

□ 자성한 기업 발굴·홍보를 통해 상생문화 확산

- 협력사 외에 중소기업·소상공인·미거래기업까지 상생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적극 발굴

*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 상생협력 활동을 '가치삼시다 TV(유튜브)', 카드뉴스 등 통해 기업의 이미지 제고 지원 및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



□ 사회적 가치실현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중기부, 법무부, 동반위, 수출입은행)

- 자당한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출입국 우대 등 지원하고, 요건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지원(안) >

- (평가가점) 동반성장지수(동반위)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중기부) 가점 신설
- (출입국)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2년간) 혜택 제공
 - * 동반 3인까지 전국 공항만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등
- (조사면제) 상생협력 우수기업(상생법 제16조에 의거 대통령표창 이상) 선정시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년 면제
- (금리우대) 수출 지원 효과가 높은 '자당한 기업(대기업)'과 수출입은행간 상생협력 약정을 체결 수출정책자금 금리 우대(수출입은행)
 - * 지원대상 : 대기업과 해외 동반진출, 수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②

중소기업 판로확보 지원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중기부)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방식의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
 - 공공조달시장에서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소재의 국산화 및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를 유도
- 지원 업체의 원활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제품별 시장 할당*, 입찰 가점 등 우대

* 제품별로 전체 시장의 20~30%를 제도 참여기업과 소기업 등에 할당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공사 분야 우선 적용(1단계) 후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2단계)하여 활성화

* 법적 근거 : (1단계)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19.11), (2단계) 판로지원법 개정

< 시장별 시행 단계 및 지원 유형 >

구분	세부 구분	시장 규모	시행 단계		주요 지원유형
			1단계	2단계	
물품	일반 물품	16조원	-	시행	수입대체형
	중기간 경쟁제품	30조원	시행	시행	혁신성장형
용역	소규모 용역 (경쟁제품 제외)	15조원	-	시행	혁신성장형(s/w) or 수입대체형
	대규모 용역	6조원	-	시행	수입대체형 or 역량강화형
공사	공 사	56조원	시행	시행	역량강화형

- * (혁신 성장형)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멘토를 통해 조달진입
- * (수입 대체형) 조달에 납품되는 수입품을 대중기간 협력을 통해 국내 제품으로 대체
- * (역량 강화형) 대기업의 입찰경험과 역량을 이용→중기 기술·시공 능력을 배양

□ 중소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 복지몰(동반성장몰) 이용 촉진 (중기부)

- 대기업·공공기관 임직원이 복지포인트를 활용, 복지몰에 등록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판로에 기여
 - * 현대차, LH 등 16개 대기업·공공기관 참여, 167억원 누적매출 달성('18.2월~'19.10월)
- 동반성장평가 등 인센티브* 부여하여 공공기관, 대기업 등으로 확산 추진
 -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표 신설, 민간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비중 확대 등
 - * (기대효과) 공공기관의 복지포인트 지급액('18년 3,242억원)의 10%를 동반성장몰 이용 유도시 324억원의 중기제품 판매 효과

③ 복지·임금 격차 완화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성화 (중기부)

- 민간에서 구축한 복지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복지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19.9~)
 - * 중기부-대한상의, 중소기업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9.7)
 - 휴양, 자기개발, 건강관리, 상품몰 등 최저가 혹은 보다 할인된 서비스 제공
- 제휴기업 및 복지상품을 확대*하고, 기업의 복지투자 유도를 위해 복지포인트 지급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
 - * 현재 SK엠엔서비스 등 19개 기업과 제휴
 - **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 시 중기부 지원사업 우대 등 혜택 부여(고시 개정)

□ 「혁신주도형 임금격차해소 운동」 추진 (동반위)

- 임금격차해소를 위해 기업간 자율협약에 따라 조성된 10조원 ('18~'19, 45개사 협약금액)을 활용하여 임금·복리후생 등 지원(~'22)

< 협약체결 기업 협약금액 : 총 10조 2,854억 원(~'22년까지 지원) >

지원 분야	지원규모	주요 지원내용
①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5,287억원	▶ 협력기업 직원 인센티브 지원 등
② 임금지불능력 제고 지원	2조 8,651억원	▶ 공동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지원 등
③ 경영안정금융 지원	6조 8,916억원	▶ 동반성장펀드 조성 등
합 계	10조 2,854억원	-

- 신규 협약은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R&D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등 추진
 -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구매상담회* 공동 개최 확대
- * ('19년) 경남, 충남, 인천 3개 지역 → ('20년) 울산, 전남, 경남 등 5개 지역

4 시장감시 강화

① 건설분야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 공공분야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의무화 (공정위)

-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공분야(국가 및 공공기관) 건설공사 관련 경쟁 입찰 방식의 하도급계약의 최저가 입찰금액 및 낙찰금액을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 (하도급법 개정)

* 현재 해당 공공분야 건설공사의 발주단계에서는 예정가격, 입찰자별 입찰금액, 낙찰금액 등을 공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82조 등)

** 하도급단계에서도 수급사업자명, 하도급공종, 하도급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등 정보는 공개(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의적 재입찰 및 최저가 입찰 종료 후 추가협상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사전 예방

*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7호)

< 공공 건설분야(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하도급 거래단계별 공개대상 정보 >



☐ **건설분야 하도급 입찰 정보 공개 유도 (공정위)**

- 건설분야 하도급입찰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최저가 입찰금액** 등을 공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 경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②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감시활동 강화

☐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 강화 (중기부)**

-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대상으로 **가맹본부***, **공기업**(지방공기업 포함) 포함**하여 조사

* 가맹본부와 원부자재 납품업체 간 수·위탁거래 조사

** 공기업 30개사, 가맹본부 100개사 포함 총 12,000개사 조사 ('19.11~'20.6)

- **2→3차, 3→4차 단계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상담 및 신고내용 등 분석을 통해 직권조사 대상 도출

☐ **지자체 협업을 통한 지역 밀착 감시체계 구축 (중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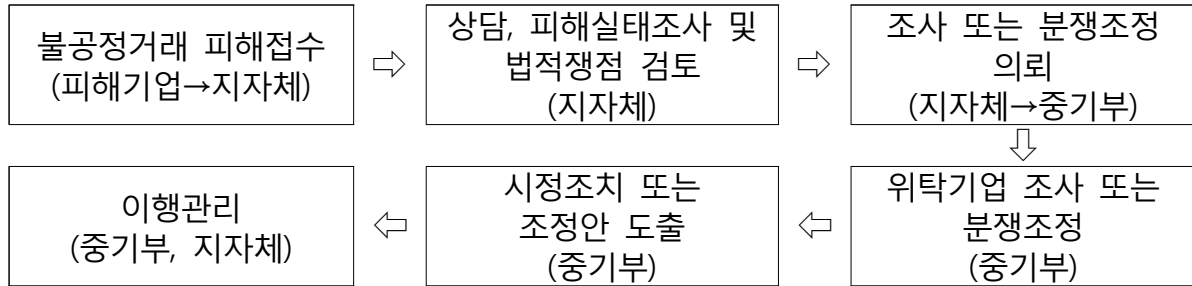
- 지자체는 중소기업의 애로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나, 지자체는 **조사·조정권한이 없어** 단순 법률상담·안내에 그치는 실정

* 서울시(눈물그만상담센터), 인천시(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등

- 중기부-지자체 간 지역 밀착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조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

* (중기부) 지자체 접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분쟁조정 및 시정조치 (지자체) 피해기업 상담 및 피해 실태조사, 조사·분쟁조정 의뢰

< 중기부-지자체 협업체계(안) >



③ 상생협약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 규제를 대체하는 상생협약 유도 (중기부, 동반위)

- (가칭)상생협력지원센터*를 운영해 상생협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및 법률자문 등 지원하고,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

* 동반성장위원회 내 설치, △상생협약 중재 △법률자문 △협약이행 점검 및 이행독려 등 역할 수행

- 사업영역 보호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칭)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상생방안을 사전 논의

* 사전조정협의회 : 신청 업종별로 공익위원(3명 내외)을 임명하고, 공익위원들이 대·중소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재안을 권고

□ 상생협약에 대한 시장감시 등을 통한 이행력 제고 (중기부, 동반위)

- 대기업의 위반여부 및 사업영역 보호 규제에 의한 영향을 주기적 조사·분석함으로써 이행력 확보 및 부작용 최소화

* 상생협약 50건, 사업조정 120건 등 총 185건 협약의 이행여부 조사

** 영향분석 : △중소·상인들의 경영개선 효과 △산업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 영향 △국내 대기업 역차별 △생존·폐업률 등 조사

- 상생협약 등 사업영역 보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보완
 - (생계형 적합업종) 대기업이 소상공인단체와 상생협약을 파기하는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 (생계형 적합업종법 개정)
 - * 생계형 적합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시까지 신청 가능
 - (사업조정) △일시정지 권고 반복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향 및 차등 부과 △사업조정 회피를 위한 우회 사업 확장 방식 제한 (상생협력법 및 시행규칙 개정)

4

시장감시 사각지대 해소

□ 용역업종 감시 강화 (공정위)

-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발생이 빈번한 용역 업종을 파악하여 하도급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 검토 (필요시 역무범위 고시 개정)
 - * 용역업종의 경우 제조·건설업과 달리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화물운송, 경비업 등 11개 업종만 법 적용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 규제 사각지대 존재
- 공공분야 발주 정보화사업을 수주한 주요 SW사를 하도급서면 실태조사 대상으로 포함

□ 금형 관련 모범거래관행 보급 (공정위)

-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금형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회수하거나 유지·보수 비용 등을 전가할 우려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 금형 관련 비용부담 주체, 금형 보관 기간, 회수 절차 등에 대한 모범거래 관행(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동차 등 관련 업계에 보급
- 자동차기계 등 금형 사용이 많은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모범거래 관행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 *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금형을 일방적으로 회수하거나 유지·보수비용 등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금형이 물품제조에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권리의무 관계를 계약서 등에 명확히 할 필요

[기타] 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정보 제공 활성화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공정위)

- 관련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초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승인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추가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을 제고 (하도급법 개정)

* 현재는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시장에 보급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만 가능

** 약관의 경우 양자 방식을 병행하여 표준약관 제정 (약관법 제19조의3)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체계 정비 (공정위, 통계청)

- 하도급서면 실태조사* 표본선정 및 조사체계에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 대표성과 유의성 보완 후 국가승인통계화를 추진

- 조사표, 조사결과 및 관련 데이터 정보를 민간에 공개

* 1999년부터 추진, 매년 10만개(원사업자 5천개, 수급사업자 95천개) 대상

- 도급 단계별(1차, 2차, 3차 등) 거래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별 하도급 거래의 특성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설문 순서·항목 등을 재설계

-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명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허위 자료 제출 방지

*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 실시

②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혜택 확대

□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확대 (공정위)

-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여 '05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매출액 등의 규모를 현행보다 1.5배 상향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 (제조·수리) 연간매출액 20억원→30억원,
(건설)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45억원

* 최근 15년간('02→'17)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은 약 1.7배, GDP 디플레이터는 약 1.4배 증가

□ 하도급법 위반시 분할납부 가능 과징금 범위 확대 (공정위)

-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분할납부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한 과징금 하한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하도급법 개정)

* 최근 5년간 중소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된 51건 중 분할납부가 가능한 10억원 초과 부과 건은 없음 (반면 최근 10년간 분할납부를 신청한 중소기업은 5곳)

□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 (공정위)

-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20년부터 선정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및 후속절차(선정요건, 선정절차, 혜택부여, 관계기관 통보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업무절차 개선

* 2016년까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였으나 2017년부터 공정거래협약 제도와 일원화하여 별도 선정하지는 않음

- 모범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 경감 등 혜택 부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③ 하도급법상 규제 내용 명확화

□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화 (공정위)

- 하도급법 주요 위반행위 유형(부당단가 결정, 대금지급의무 위반, 기술유용 등) 별로 세부 부당성 판단기준 마련 (과징금고시 개정)

- 위반행위 중대성, 피해규모, 거래규모, 지역적 범위 등을 고려

*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악의성이 큰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위반행위의 부당성, 피해발생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을 판단하도록 개선

□ 기술유용 관련 규정 정비 (공정위)

- 기술유용 관련 국내외 법률* 및 사례 등을 분석하여 기술자료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 (연구용역 실시 후 하도급법 개정 추진)

* 하도급법(공정위), 부정경쟁방지법(특허청), 중소기업보호법(중기부), 상생협력법(중기부)

- 하도급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통행위 심사지침 개정

* 제3자에 대한 기술 '유통'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기술자료 요구 시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폐기 방법 등을 포함하여 서면을 주도록 기술자료 요구서 양식을 개정

□ 경영정보 요구 가능 범위 구체화 (공정위)

- 원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 (하도급 공정화지침 개정)

- 관계 법령 상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이행,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 등의 계약 이행 및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상 정보 요구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으나('18.7. 시행),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재

④

범부처 하도급정책 네트워크 강화

□ 범부처 하도급정책 협력 네트워크* 운영 관련 추진체계 마련 (공정위)

* 하도급거래 우수 사업자 또는 상습범위반 사업자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협의체('06년~)

-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별 조치 실적 파악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부처 간 협력 강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 (공정위) 우수 하도급업체/상습 범위반업체 명단 통보 → (부처) 자율적으로 혜택/불이익 제공

** 현재는 명시적 규정 없이 운영되어 부처별 실적 파악 등에 애로

□ 부처 차원의 우수 하도급사업자에 대한 혜택 또는 상습 범위반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도 지속 발굴하여 네트워크의 실효성 제고

- 민간 차원에서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검토

* (현재) 정부부처 또는 국책 금융기관의 혜택 부여 → 민간은행의 자발적 참여 유도 검토

IV. 과제별 추진 일정

- 법률 개정 과제는 '20년 말까지 완료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20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

* 입법예고가 불필요한 규정은 '20년 1분기 내 개정을 완료하여 속도감 있게 대책 추진

정책목표	과제명	추진 방식	완료 시기	소관부처 (주무부처)
① 거래 공정화 기반 조성	① 납품대금 조정신청권 확대			
	○조정협의권자 및 사유 확대	하도급법 및 상생법 개정	'20.12.	공정위 중기부
	○협의대상 원사업자 확대 등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20.6.	공정위
	② 중소기업단체의 교섭력 강화			
	○소규모 조합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기준 마련	예규 제정	'20.3.	공정위
	○중기조합 공동사업 법적 안정 장치 마련	고시 제정	'20.2.	중기부 공정위
	③ 피해사업자 권리구제 절차 개선			
	○중소기업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소송 활성화	하도급법 및 상생법 개정	'20.12.	공정위 중기부
	○제재수준 결정시 피해구제 노력 반영 확대	하도급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	'20.6.	공정위
	○분쟁조정외 대상 범위 확대	하도급 공정화지침 개정	'20.6.	공정위
	④ 수위탁 거래 자율준수 기반 구축			
	○상생협력법 위반행위 요건 구체화	상생법 및 수탁·위탁 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20.12.	중기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상생법 및 시행규칙 개정	'20.12.	중기부
	⑤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하도급 벌점 경감사유 및 경감폭 조정·정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20.6.	공정위
	○입찰참가 제한제도 종합 개선방안 검토	연구용역 실시	'20.12.	공정위
	○반복 법위반 사업자 공정 거래협약 평가 대상 제외	공정거래 협약기준 개정	'19.12.	공정위
	○법 위반기업 동반성장평가 등급 하향	지수 평가지침 개정	'20.12.	동반위 중기부

② 대·중소 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① 상생결제 활성화			중기부	
	○2차 협력사 이하로의 상생 결제 활성화	공정거래 협약기준 개정	'19.12.	공정위	
	○공공기관 상생결제 참여확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침 개정	'20.12.	행안부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인프라 확충	상생법 개정	'20.12.	중기부	
	② 공공기관 동반성장체계 개편			중기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 확대	평가대상 고시	'20.6	중기부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침 개정	'20.6	중기부	
	③ 상생기금 등 협력자금 확대 운용		조특법, 상생법 개정	'20.12	중기부 기재부
	④ 더불어 성장하는 거래문화 촉진				
		○대기업의 자율적 일감개방 유도	공정거래 협약기준 개정	'19.12.	공정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개선 유도	공정거래 협약기준 개정	'19.12.	공정위	
③ 상 생 형 프로그램 발 굴 · 확 산	① 자상한 기업 발굴·확산		지수 평가지침 개정 등	'20.12	중기부
	② 중소기업 판로확보 지원				
	○공공조달 생생협력 지원 제도 도입	판로지원법 개정	'20.12	중기부	
	○동반성장물 이용 촉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침 및 지수 평가 지침 개정	'20.12	중기부	
	③ 복지·임금 격차 완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성화	예산사업	'20.12	중기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운동 추진	동반위 자율 활동	'20.12	동반위	
④ 시장감시 강화	① 건설분야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100억 이상 공공분야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의무화	하도급법 개정	'20.12.	공정위	
	○건설분야 하도급 입찰 정보 공개 유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20.6.	공정위	
	②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감시활동 강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 강화	정기 실태조사 및 직권 조사 실시	'20.9.	중기부	
	○지자체 협업을 통한 지역 밀착 감시체계 구축	지자체 협의·시행	'20.6.	중기부	

[기타] 제도 및 운영 방식 개선	③ 상생협약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 규제를 대체하는 상생협약 유도	동반성장위원회 내 센터 설치	'20.3	중기부
	○ 상생협약에 대한 시장감시 등을 통한 이행력 제고	생계형 적합업종법, 상생협력법 개정	'20.12	중기부
	④ 시장감시 사각지대 해소			
	○ 용역업종 감시 강화	용역분야 실태조사 및 SW사 서면실태조사 실시	'20.12.	공정위
	○ 금형 관련 모범거래관행 보급	가이드라인 마련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20.12.	공정위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정보제공 활성화			
	○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방식 추가	하도급법 개정	'20.12.	공정위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체계 정비	국가승인통계화 추진	'21.3.	공정위 통계청
	②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혜택 확대			
	○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확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20.6.	공정위
	○ 하도급법 위반시 분할납부 가능 과징금 범위 확대	하도급법 개정	'20.12.	공정위
	○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	가이드라인 제정 및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20.6.	공정위
	③ 하도급법상 규제 내용 명확화			
	○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화	하도급 과징금고시 개정	'20.6.	공정위
	○ 기술유용 관련 규정 정비	연구용역 실시	'20.12.	공정위
	○ 경영정보 요구 가능 범위 구체화	하도급 공정화지침 개정	'20.6	공정위
	④ 범부처 하도급정책 네트워크 강화			
	○ 네트워크 구축 근거 명확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20.6.	공정위